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83호

나. 제 안 자 : 채인묵 의원(찬성의원 9명)

다.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규정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 개정(2020.8.12.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상의 지원대상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나. 전통시장·상점가 현황 및 지원내용

- 서울시는 “전통시장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전통시장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상권 활성화, 시설현대화, 청년상인육성,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9개소(점포수 6만개소, 상인수 12만명, 상인회 등록수 224개) 중 상점가는 61개소, 해당 점포수는 1만 907개, 상인수는 2만 4천여명임.

#####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현황>

구 분 <sup>1)</sup>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수	상인회 등록수(개)
계	349	60,005	121,428	224(63.7%)
등 록	135	29,639	53,505	51(37.5%)
인 정	118	16,890	39,418	112(94.9%)
상점가	61	10,907	24,728	60(98.3%)
무등록	35	2,569	3,777	1(2.8%)

1) (등록 시장) 2006년 6월 이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타 대규모 점포 중 시장으로 등록된 곳

(인정 시장)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의 점유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상가건물/복합형상가)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이벤트 지원, 긴급보수지원, 주차환경개선 등의 사업분야에 586억원(2020년)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사업내용	편성예산
합계		58,616
경영 현대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615
	상권르네상스 사업	425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978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96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913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3,111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684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	2,454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33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0,668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	3,50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47
	노후전선 정비사업	1,489

-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올해(1~9월) 서울시에서 5천 8백 60억원, 전국기준 3조 1천 8백억원 규모로 판매되었음.

다. '골목형상점가' 용어 신설(안제2조제2호의2)

-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

(상 점 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무등록시장)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시·군·구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류한 시장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카페, 제과점, 음식점 등은 도·소매업이 아닌 용역점포로 분류되면서 상점가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이에 국회는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소상공인<sup>2)</sup>’이 운영하는 점포가 조례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sup>3)</sup>’로 지정하여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원 근거법령 및 인정기준>

구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안)
관련 법령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인정방법		사군구에서 인정 후 공고	별도 인정절차 없음	시·군·구의 조례로 지정
인정 기준	구역 면적	면적이 1,000㎡ 이상*인 구역으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업종 및 점포수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 점포수 기준(30개 이상)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점포 비율	도·소매점포 50% 이상	도·소매점포 50% 이상 (산업부 업무처리 기준)	해당 없음
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에서 지원대상으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 의 개념을 조례에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의의의가 있음.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은 자치구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나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 건인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특히,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로 인정돼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개별 지원 사업에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대상 사업에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이 요구됨.
-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조례” 제3조제1항4)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4)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3년 첫 수립 이후 2016년과 2019년 계획수립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 은 샘	02-2180-8064